

大學講師의 矛盾的 地位, 그 현황과 문제점

全 明 赫

(全國大學講師勞組 教育委員長)

1. 머리말

현재 大學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 중에서 이를 드러내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대학강사, 이른바 時間講師의 지위와 처우의 열악함에서 볼 수 있다. 대학강사의 수는 증대하고 그들이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강사의 福祉問題, 다시 말해 대학강사가 그들의 강의(노동)와 연구(노동의 재생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강사료, 아무런 신분적 규정조차 없는 대학강사의 비참한 사회적 지위는 이들을 장단에서 끌어내려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教育外的 勞動에 종사하게끔 만들고 있다. 전국의 3만여 대학강사들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의 1/3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강사료에 講義와 研究를 수행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역암적 모순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대학강사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되기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학강사의 고뇌에 찬 삶의 조건 속에서 그들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을 결성하여 스스로를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학술·노동운동에 복무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학강사들의 증가 현상과 그 원인, 대학강사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개되고 있는 教育法 개정투쟁 등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며, 대학강사제도의 모순적 상황을 인식하고 진정한 해결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大學講師의 現況과 問題點

1) 대학강사의 累積 현상과 依存度 심화

1991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 시간강수는 30,584명이며, 전임교수수는 34,159명으로 밝혀졌다. '87년의 21,161명에서 4년 만에 무려 1만여 명의 대학강사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표 1>에 의거해 볼 때, 전임교수수에 대한 대학강수수의 비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는 '89년에 이미 대학강수수가 전임교수수를 넘는 현상이 벌어졌다. 즉, 교수 100명당 강수수는 '87년 92명에서 '89년 103명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학강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결

〈표 1〉 대학강사수의 증가추세

구 분		'87	'88	'89	'90	'91
전 임 교수수	전 체	28,311	29,437	30,933	32,281	34,159
	국·공립	8,741	9,041	9,340	9,658	10,078
	사립	19,570	20,396	21,593	22,623	24,081
시간강사수	전 체	21,161	22,517	27,044	28,846	30,584
	국·공립	3,218	4,215	4,748	5,294	5,671
	사립	17,943	18,302	22,296	23,552	24,913
강사비율(%)	전 체	75	76	87	89	90
	국·공립	37	47	51	55	56
	사립	92	90	103	104	103

* 강사비율=시간강사수/전임교수수×100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87~'91).

한편히,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평론』, 1992년 6월, p.213 참조.

국 대학교육에서 대학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심화, 즉 대학강사 依存度의 深化로 나타난다. '90년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교육발전지표』에 따르면, 76개 사립대 중 대학강사의 강의시간 담당 비율이 전체 강의시간의 50%를 넘는 대학이 25개 교이며, 40%가 넘는 대학이 41개 교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강사의 절반 가량이 대학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大學講師의 급격한 增加 現象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차적으로 5공화국의 집권 초기에 시행한 무리한 대학정원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81년도 卒業定員制의 시행 이후 대학정원이 무려 30%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학교수의 수 및 여타 교육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75년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0.9명이었던 것이 '81년에는 32.3명, '85년에는 37.7명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발전지표』, 1990, p.15 참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립학교 제단은 확대될 등록금 수입을 대학의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단의 수익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여 필요한 전임교수의 수요를 저렴한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왔던 것이다. 여기에는 "시

간강사 3명을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한다"는 대학설치기준령 제 6호의 규정이 법적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대학강사 또는 학문적 생애를 살아가려는 연구자들의 사회적 진출이 봉쇄되어 있는 社會의 構造的 矛盾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대학강사들은 대부분 박사과정중에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수용할 연구기관이나 대학 전임교수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심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학강사를 끊임없이 양산·누적시키고 급기야는 '博士失業者'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2) 講師料 문제

'92년 5월 30일자 『대학강사노보』에 의하면 '92년도 주요 대학의 강사료 인상 현황은 뒤의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시간당 강사료는 '91년도 10,000~14,000원에서 '92년도에는 11,000~15,000원으로 약 1,000~2,000원 정도 인상되어 11%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1%의 인상률은 '91년 10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서 조사한 실질물가상승률 33%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를 훨씬 밀도는 인상률이

〈표 2〉 주요 대학 '92년도 강사료 인상현황

구 분	'91년	'92년	인상률(%)
고려대	10,000	11,500	11.5
영남대	10,000	11,000	11.0
연세대	12,000	14,000	11.6
강원대	11,500	13,000	11.3
서울대	11,500	13,000	11.3
숙명여대	12,300	13,600	10.7
이화여대	13,700	15,300	11.1
서강대	12,600	15,120	12.0
성균관대	14,000	15,400	11.0

다. 또한 11% 인상이라고 해도 실제 강사의 1개월 임금액으로 산출하면, 한국노총이 3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산출한 862,000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액수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고려대의 모 강사가 1주당 5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 강사의 1개월 강사료는 $5(\text{시간}) \times 11,500(\text{원}) \times 4(\text{주}) = 230,000\text{원}$ 일 것이다. 그러나 모 강사는 방학중에 아무런 연구비나 상여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은 $5(\text{시간}) \times 11,500(\text{원}) \times 4(\text{주}) \times 8(\text{개월}) / 12(\text{개월}) = 153,333\text{ 원}$ 이다.

대학 4년을 마치고 최소한 석사·박사과정에서 4년 이상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젊은 연구자들에게 월 평균 15만 원의 금액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학강사들의 대부분이 30대 초반 이상의 나이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까지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전국의 모든 '순수' 대학강사는 그들의 연구를 중단하고 직업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번역과 잡글, 과외지도, 학원강사 등의 교육외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大學教育의 質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강사의 학문적 수준과는 결코 무관한 것이다.

임금은 勞動力에 대한 가치이다. 또한 모든 임금에는 노동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講師료에는 강의라는 특수한 노동에 대한 비용과 강의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휴식 등의 비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료는 연구비, 주

거비, 보건위생비 등의 기본급과 강의료, 교통비, 식비, 서점출제비, 체육수당 등 제 수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월(방학은 제외) 시간당 강사료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본급+제 수당'으로 貨金構造를 改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방학중에도 기본급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강사의 사회적 신분 문제와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다.

3) 社會的身分 문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강사료 지급 방식은 대학강사의 不安全한 地位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법에서 대학강사를 언급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설치기준령 제6조에서는 "전임교원 1인을 시간강사 3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운영·설립케 하는 요건으로 대학강사 규정을 적용하여 부족한 전임교수수를 저렴한 대학강사로 대체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학강사를 "교수의 직무를 보조키 위해 상시근무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는 "정규전임교원의 역할을 대행하면서도 교권이나 신분보장 등은 적용받지 못하는 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대학강사는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法의 保障이 전혀 없이 교육은 위축하되, 교권은 인정되지 않는 비참한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한 현행 교육법 75조 '교직원 및 임무'에 대한 조항은 조교도 정식 교직원으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강사를 법적 교원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강사에 대한 온갖 모순된 처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학강사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관계법이 대학강사를 正式教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런 신분적 규정도 없기 때문에 대학강사의 任用問題도 아무런 原則이 있을 수 없다. 각 학과의 관행에 따라, 학과장의 권한에 의해 매 학기 강사의 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모 대학에서는 '강사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 대학에서는 불합리한 대학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또한 모 대

학에서는 교수임용에 관여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 학기 강의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서는 강사임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강의 실시 2개월 전에는 강사임용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강사의 해임시 구체적인 해임사유와 해임통보를 발송하는 최소한의 民主的節次는 준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강사의 研究條件改善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직장에 비군 편성, 재직증명서 발급, 강사연구실, 강사 휴게실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강사들은 예비군 훈련이 강의와 겹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휴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교실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성거리다 강의시간에 맞추어 교실에 들어가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된다. 또한 대학강사라는 신분으로는 은행의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대학강사의 신분이 정식교직원이 아니라 매학기당 고용되는 일용잡급적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적 처지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4) 實態設問調査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92년 3월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에서 고대 강사의 교육 및 연구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30여 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본다. 현재 大學講師의 現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조사대상은 무작위 추출한 100명이었으며 85명이 응답했다.

강사들의 학력은 박사과정 재학생이나 수료자들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18%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 강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8%나 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최고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사경력은 2~3년이 가장 많은 38.6%, 1년 이하가 23%, 6년 이상이 20.5%, 4~5년이 18.1%로 나타났다.

평균 강의시간(한 학기)은 4~6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31.1%), 다음이 1~3시간(26.5%),

10시간 이상(24.1%), 7~9시간(1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사들의 70%가 결혼을 했으며, 55%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고, 3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생활비 조달은 강사로 수입이 15.7%, 배우자 수입이 19.3%, 의부지 월(부모님 등)이 28.9% 그리고 부업이 33.7%로 대부분의 강사가 강사로 이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비 마련 때문에 연구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람이 57.8%였고, 어느 정도 받는다는 사람이 37.3%로 대부분이 생활고로 인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강사를 하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경력을 쌓고 싶어서가 60.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가 21.7%, 연구에 도움이 되어서가 7.2%, 인간관계 때문에가 6.0%로 나타나 경력과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사 일용과정은 과내의 내규 혹은 관례에 의해서가 65.1%, 교수 추천이 30.1%, 기타 3.6%로 대부분이 학과의 관례나 교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사 일용에 대해서 61.4%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4.5%만이 현재의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강사 생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5년 이상을 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49.4%였으며, 3~5년이 27.7%, 1~3년이 16.9%, 1년 미만이 3.6%로 나타나 대부분의 강사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상당 기간 강사로 전전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강의 수강인원은 50~100명이 51.8%였고, 30~50명이 21.7%, 100명 이상이 18.1%, 30명 미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4.8%였다. 강의하기에 적당한 인원수는 57.8%가 30~50명을, 30명 미만이 38.6%로 대부분의 강사들이 50명 미만의 인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강사가 정식교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51.8%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강사 스스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2%,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응답이 1.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강사는 혼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주체가 강사 자신임을 말하고 있었다.

3. 大學講師 문제의 改善方向

1) 教育關係法 改正의 필요성

최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등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교육공대위')를 구성하여 '90년 3월 개악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법의 옳바른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공대위는 지난 8월 20일 연세대에서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울공청회'를 가졌고, 9월에는 대전·광주·부산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갖는 등 그동안 권력과 자본에 의해 축소되어 왔던 大學의 自律化·民主化를 통하여 교육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작업을 벌여 나갔다.

교육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강노는 특히 대학강사의 身分·地位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들어 '대학강사의 교수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시안)의 제정을 제기하였다. 이 特別法의 주요 내용은 대학강사를 정식 교원으로서 명시하여 적정한 경제적·사회적 신분을 보장할 것,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것, 대학은 강사의 교수 및 연구 활동에 필요 한 제반 여건을 전임교수에 준하여 보장할 것, 국가는 강사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것 등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국의 3단여 강사들은 최저생계비의 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강사료와 아무런 신분적 규정도 없는 열악한 연구조건 속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강사의 비참한 사회적 신분과 연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몸부림은 최소한의 요구로서 정부와 대학당국에 의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2) 大學講師運動의 향후 方向

대학의 양적 팽창이 빚은 대학교육의 극심한 질적 저하, 권위주의 및 관료주의에 편승한 대학의 과행적 운영, 사학의 엄청난 구조적 비리

속에서 대학강사들은 자신들의 모순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88년 8월 대학강사협의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협의회 차원으로 대학강사의 요구 조건들이 관철되기에에는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일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강사운동을 통일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90년 4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여기에 민중·민주적 학문을 연마하는 연구자, 대학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자, 노동 운동의 한 부문에 복무하는 노동자로서 대학강사의 '중중결정'된 지위와 역할이 존재한다.

사실 대학강사의 矛盾的 地位는 단지 대학강사에게만 국한된 현실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일노동자는 자본-일노동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억압·착취받는 존재들이다. 최근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국가권력과 융합된 자본의 논리가 보다 광범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대학강사들의 교육법 개정투쟁은 강사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일반민주주의적 차원의 요구투쟁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대학강사의 비참하고 모순된 지위의 구체적인 사실과 그 원인을 짚어보면서, 대학강사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최근 전강노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대위의 教育法 개정투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강노가 제기한 '대학강사의 교수 및 연구조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앞서 언급한 대학강사의 응축된 모순과 부당한 지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대학강사의 모순적 상황은 단지 제도 개선의 차원으로 완전히 해결되기에 불가능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構造的 問題點과 더불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강사의 제반 문제해결에 있어 전강노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